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로1 장인홍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8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건의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